

인천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가단2498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유장미

피 고 A

소송대리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득

변 론 종 결 2022. 2. 9.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680,6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0,6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6,205,01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5,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 1) 원고는 2019. 4. 17. C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30,600,000원, 보증기한을 2024. 4. 16.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행해주었다.
- 2) C은 2019. 4. 19.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36,000,000원을 변제기 2024. 4.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
-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때 C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제6조). 또한 원고가 C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제3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C은 이 사건 대출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지급을 지체하여 2020. 1.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2. 10. 이 사건 은행에게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았다.
- 2) 원고는 2020. 6. 18. 이 사건 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24,645,8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은 83,160원, 채권보전비용은 414,864원(211,924원 + 203,870원 - 회수금 930원)이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21차전104427)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9. "C은 원고에게 25,096,668원(대위변제금 24,645,801원 + 위약금 83,160원 + 채권보전비용 367,707원) 및 그중 24,645,801원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71,5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결정정본은 2021. 3. 15. C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 1) C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30. 접수 제412518호로 채권최고액 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 C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같은 등기국 2020. 3. 5. 접수 제107695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G)가 진행되었고, 2021. 12. 30.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2. 1. 26. 원고에게 26,52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6,873,97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9. 4. 17.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 1. 11. 이 사건 대출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20. 2. 10. 신용보증사고 사실을 통지받고, 2020. 6. 18. 이 사건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인 C의 무자력

갑 제8~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아래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다.

부동산목록	가액(원)
서구 H건물 제지층 I호	74,000,000
서구 J건물 K호	129,000,000
서구 L건물 제1층 M호	127,000,000
이 사건 부동산	257,700,000
합계액	587,700,000

한편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은 아래 채무목록 기재 채무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부터 2020. 5. 13.까지 발생한 세금과 대출 이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와 같으므로1),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자	채무액(원)
각 세금 및 보험료	5,553,390
주식회사 N	167,000,000
피고	13,000,000

O조합	35,000,000
P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
Q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0,00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120,000,000
R캐피탈	844,858
S캐피탈	1,744,836
T대부	5,524,512
U은행	24,922,044
V캐피탈	9,000,000
W대부	15,000,000
이 사건 은행	42,325,868
X카드	4,897,792
Y카드	6,246,425
Z카드	9,988,145
AA카드	1,374,871
합계액	602,422,741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

C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금으로 피고로부터 2020. 3. 5.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위하여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B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고, C이 피고에게 2020. 3. 5. 차용금 5,000,000원(이자율 월 1.8%, 90,000원)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대부업자로서 C에게 2019. 10. 30. 13,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20. 3. 5. 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9. 10. 30. 피고의 누나인 AC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6,000,000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5,700,000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② C은 2020. 5. 15. 개인회생을 신청(인천지방법원 2020개회14370)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2020. 5. 13.자 기준)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주장의 위 대출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C은 2020. 8. 4. 변제계획 수정안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2020. 5. 13. 기준)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도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산목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기재하면서도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액만을 공제하였다.

③ 원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2020. 8. 5. 기각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의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20. 8. 11. C에게 위 기각요청서에 대한 답변 제출을 권고하였고, C은 그제서야 “2019. 10. 30. 밀린 은행권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피고에게서 대출을 받았고, 자금이 더 필요하여 피고에게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있지만 괜찮다며 2020. 3. 3. 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주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020. 9. 3. 피고의 위 각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④ 더욱이 원고는 위 2019. 10.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20. 2. 12.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경위, 차용계약서, 송금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20. 2. 14.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⑤ C은 피고로부터 2019. 10. 30.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6,52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대구지방법원 2020카단30869)를 신청하여 2020. 2. 20.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렇듯 피고는 C이 자금 부족으로 다른 일반채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20. 3. 5.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로 대출을 하였다.

⑥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가 아님에도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공제한 잔존 가치)을 공동담보에서 제외시켜 다른 일반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일인 2022. 1. 26.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25,096,668원(대위변제금 24,645,801원 + 위약금 83,160원 + 채권보전비용 367,707원²⁾)과 독촉절차비용 71,500원 및 지연손해금 4,032,458원[1,463,893원{24,645,801원 × 271일(2020. 6. 18.~2021. 3. 15.)/365일 × 연 8%,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 2,568,565원{24,645,801원 × 317일(2021. 3. 16.~2022. 1. 26.)/365일 ×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그중 26,52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2조 제1항3) 에 따라 비용,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위약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비용과 대위변제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채권은 2,680,626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4,115,618원(4,032,458원 + 83,160원) -
나머지 배당금 1,434,992원{26,520,000원 - 비용 및 대위변제금 25,085,008원(대위변제금
24,645,801원 + 채권보전비용 367,707원 + 독촉절차비용 71,500원)}]이 남는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C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이 3,441,225원이고 배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554,825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680,6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680,62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680,6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봉지수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AE에 있는 AF아파트 AG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공동주택

1층 322.3884㎡

2층 ~ 17층 각 316.78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서구 AE 대 2921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5층 A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9.560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9219.2분의 35.9554

- 이상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

1)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포함시키는 이상 구상채무를 중복하여 포함시키지는 아니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보전비용이 414,864원이었으나 이후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과 같이 367,707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

3) C의 변제금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 보증료, 보증채무이행금, 대위변제수수료, 손해금, 위약금, 지연보증료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